김상곤 "사무총장, 모든 공천 기구서 배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종의 결단"

새정치, 최재성 인선 싸고 계파갈등 확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빚어진 당내 계파갈등 중단을 촉구하며 사무총장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메르스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파문 등으로 당내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전망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의 대리인으로서 공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무총장을 공천과 관련한 모든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월 중앙위에서 의결을 요구하면서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여부를 문재인 대표 리더십을 재는 잣대로 삼겠다"며 "확실히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혁신위도 모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사무총장으로서의 공천개입 통로를 막는 등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모종의 결단'이 혁신위원직 사퇴까지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강행에 대해서는 "구체적 인선 문제는 문 대표와 최고위원의 권한인 만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으며 '사무총장 사퇴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가타부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당초 지난 23일 발표한 1차 혁신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발표를 연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을 계기로 불거진 계파 갈등은 쉽사리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주류 진영에서는 이날 최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문 대표 등 주류 진영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는 매주 월·수·금요일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에는 당분간 참석하지 않겠다며 당무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원내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있어 당의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루씩 번갈아 당 회의를 주재하는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무총장 인선 파문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도 관심사다. 주류 진영 일각에서는 비주류 '설득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다. 이미 주류와 비주류의 세력 대결로 비화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설득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공천에서의 사무총장 배제'를 천명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어 당의 '내전'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국 흐름상 당내 내분은 단기적으로 조용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근본적인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적 계기가 없다면 분열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각한 '투톱'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오른쪽)대표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정국 급랭 '후폭풍' 부담에도 거부권 선택

"배신의 정치" 여야 정치권 싸잡아 비판

조기 레임덕 막기 위한 극약처방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국 파행은 물론 국회와의 정면충돌의 부담에도 불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위헌논란이 있는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또한 조기 레임덕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헌법 정신 수호라는 '원칙'도 지키고 국정 장악력도 잃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국회법 거부권 결단으로 발현됐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수정 중재안까지 국회가 내놓았지만 정부로 이송돼온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꾸었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개인적 보신주의'와 '당리당략' '끊임없는 당파싸움'이라는 표현을 동원, 여야 정치권 모두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막말 파문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감경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5일 '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재심(再審)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오후 심리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당직 자격 정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주승용 최고위원의 탄원서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탄원서가 제출돼 그 기간을 6개월로 감경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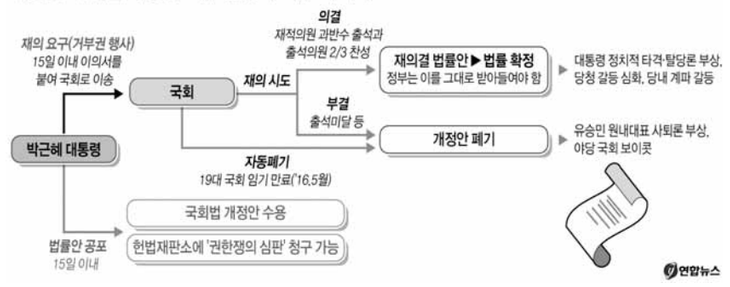

거부된 국회법 개정안 사실상 자동폐기

새누리, 재의결 않기로 최종 결정 일단 봉합

새정치, 재의 요구 않거나 일정 거부시 소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을 위해 상정을 하든, 아니면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든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헌법(제53조)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든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 목록에 포함시켜 상정할 권한은 정의장에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재의결해서는 안된다고 당론을 정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130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3석)만으로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역시 결과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재의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대여투쟁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개정안은 폐기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제외하면 재의에 부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자동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 "거부권 행사, 승률 50%의 전쟁 선포"

제헌국회 이후 거부권 행사 법안 2건 중 1건 법률로 확정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 "국회에 승률 50% 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제헌국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3건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과거 72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중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고, 이 중 법률로써 최종 확정·공포된 법률안은 36건(약 51%), 폐기된 법률안은 35건(약 49%)이다"며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번 거부권 행사까지 포함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 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6월 국회 내에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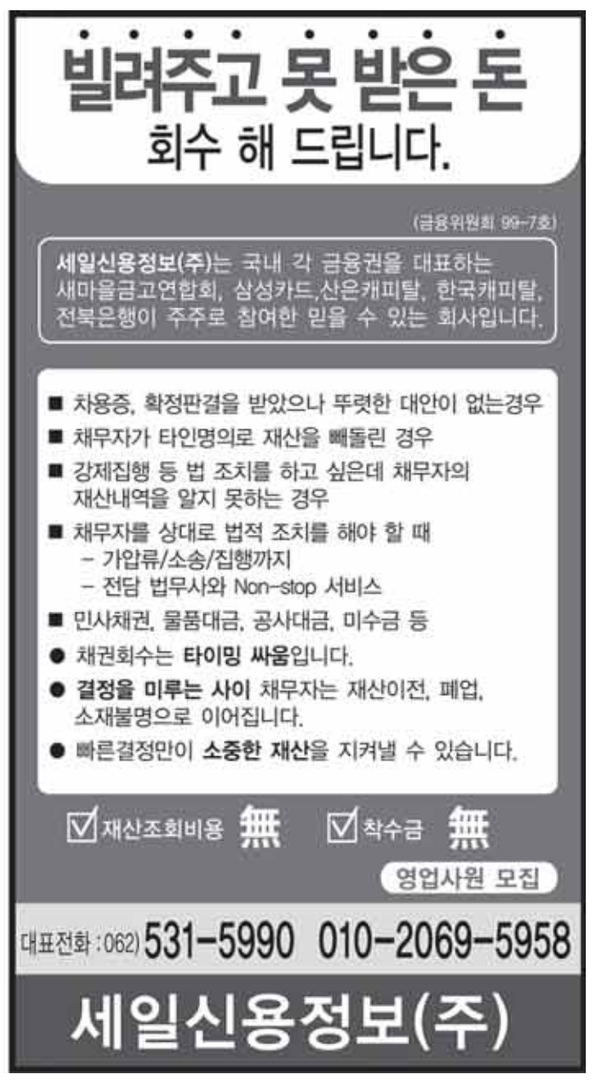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